

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 
제4차 본 회의(2017.4.24.)

# 조례안 심사 보고서



**산업건설위원회**

# 목 차

1	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
2	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-----	3
3	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-----	5
4	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---	7
5	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9
6	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1
7	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3
8	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5
9	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7
10	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9
11	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-	21
12	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--	23

##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17. 4. 3.
- 나. 발 의 자: 이흥희 의원 등 5명
- 다. 회부일자: 2017. 4. 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4. 17.

### 2. 개정이유

- 「자연공원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함(안 제2조)
  - 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조정
  - 위촉위원을 군립공원에 거주하는 주민·사업자 등 포함
  - 특별위원을 공원구역 관할 읍·면장을 삭제하고, 공원구역 안의 종교 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 추가 및 특별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.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자연공원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촉위원 확대, 위촉·특별위원을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·사업자, 종교단체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해당없음

####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####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##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##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##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#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17. 4. 3.
- 나. 발 의 자: 김향란 의원 등 5명
- 다. 회부일자: 2017. 4. 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4. 17.

### 2. 제정이유

-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정함(안 제5조)
- 나. 거창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·구성에 대하여 정함  
(안 제7조 ~ 제11조)
- 가. 거창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정함  
(안 제12조 ~ 제16조)
- 가.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정함(안 제18조)

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등 상위법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,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·운영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해당없음

##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##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##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4. 5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4. 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4. 17.

### 2. 제정이유

-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(2009.11.28. 이후)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·상속을 허용하고, 연도별 감차목표 초과 달성 시 그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 완화(안 제2조)
  - 2009. 11. 28.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양도 또는 상속 허용
- 나. 감차목표 초과 달성분의 범위내에서 신규면허 허용(안 제3조)

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양도·상속 및 신규면허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6. 토론요지: 해당없음**

**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**

**8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**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**



##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4. 5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4. 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4. 17.

### 2. 제정이유

-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명칭과 위치를 정함(안 제2조)
- 나. 공영차고지의 이용신청에 관하여 정함(안 제3조)
- 다. 공영차고지의 이용료에 관하여 정함(안 제4조, 별표)
- 라. 이용료 반환 및 감면사유에 관하여 정함(안 제5조, 제6조)
- 마. 이용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 정함(안 제7조, 제8조)

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등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이용료, 반환 및 감면사유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6. 토론요지: 해당없음**

**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**

**8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**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**

##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4. 5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4. 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4. 17.

### 2. 개정이유

- 「주차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 완화 기준 신설  
(안 제17조)

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주차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,
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6. 토론요지: 해당없음**

**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**

**8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**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**

##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4. 5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4. 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4. 17.

### 2. 개정이유

-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개선권고 사항을 정비하고,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‘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’ 명칭을 상위법령에 표기되어 있는 ‘옥외광고심의위원회’로 변경함(안 제2조, 제13조)
- 다. 상위법령의 용어에 대한 조례에서의 해석규정 삭제(안 제2조)
- 라.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근거 마련 및 전자게시대 설치 규제 완화 규정 신설(안 제5조의2)
- 마. 주민협의회 위원장 선출 규정 변경(안 제8조)

바. 상위법령 삭제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규정 삭제  
(안 제23조)

사.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된 사항 삭제(안 제19조, 제24조)

#### **4. 전문위원 검토요지**

-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,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등이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#### **6. 토론요지: 해당없음**

#### **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**

#### **8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#### **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**

#### **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**

#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4. 5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4. 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4. 17.

## 2. 개정이유

-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문제점이 야기되어 이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하고,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을 완화하여 토지효율성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신설(안 제20조의3)
- 나.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완화  
(안 제56조의7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난립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문제점이 있어 상위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별도로 정하고,
-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을 상위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용하여 토지효율성 증대 등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#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####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##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##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##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

##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4. 5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4. 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4. 17.

### 2. 개정이유

-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없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,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함(안 제4조)
- 나. 군수의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항 삭제함(안 제6조)
- 다. 관리자가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관리자의 권한을 제한함으로 삭제함(안 제8조)
- 라. 수입증가분을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금 마련 지출에 법적 근거가 없어 삭제함(안 제15조)

마. 잉여금의 처분에 대하여 상위법령 규정에 없는 사항을 법령위배 소지가 있어 삭제함(안 제16조제3호)

바. 기타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

#### **4. 전문위원 검토요지**

-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없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#### **6. 토론요지: 해당없음**

#### **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**

#### **8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#### **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**

#### **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**

#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4. 5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4. 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4. 17.

## 2. 개정이유

-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없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,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관리자의 지정 조항 삭제(안 제4조)
- 나. 인사 조항 일부 삭제(안 제6조제2항)
- 다. 기업관리규정 조항 삭제(안 제8조)
- 라. 예산의 탄력규정 조항 삭제(안 제15조)
- 마. 잉여금의 처분 조항 일부 삭제(안 제16조제3호)
- 바. 기타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없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#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####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####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##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##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#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4. 5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4. 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4. 17.

## 2. 개정이유

- 「하수도법」 제24조에 따라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만 받으면 점용행위가 가능하므로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위임 없이 별도로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부과 조항 삭제함(안 제6조)

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6. 토론요지: 해당없음**

**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**

**8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**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**

##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4. 5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4. 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4. 17.

### 2. 개정이유

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물 재이용시설 권고대상 기준을 법적기준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물 재이용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 조항 정비(안 제3조)
- 나. 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 조항 정비(안 제4조)
- 다.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조항 정비(안 제5조)
- 라. 상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조항 정비(안 제7조)

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 등 현행 조례의 권고대상 기준과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항 등을 일체정비하여 주민들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6. 토론요지: 해당없음**

**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**

**8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**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**



##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7. 4. 5.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7. 4. 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4. 17.

### 2. 폐지이유

-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신설하고,
-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일정한 시설·장비·기술 인력을 갖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자에게만 대행하도록 「하수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「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」 폐지

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신설하여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자에게만 대행하도록 개정되어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,
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6. 토론요지: 해당없음**

**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**

**8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**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**